

# 감정평가서

|       |                                  |
|-------|----------------------------------|
| 건명    | 주식회사덕원커뮤니케이션<br>소유물건(2024타경7408) |
|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br>박미정         |
| 감정서번호 | A241223-03-002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영감정평가법인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우 상 봉

(주)대영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우 상 봉 (서명또는인)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일십이억일백만원정(₩1,201,000,000.-)   |             |            |                         |                |               |
|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br>사법보좌관 박미정  |             | 감정평가<br>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6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br>(대상업체명)             | 주식회사덕원커뮤니케이션<br>(2024타경7408)  |             | 감정평가<br>조건 | -                       |                |               |
| 목록표시<br>근거                 | 귀제시목록 등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br>참고사항                 | -   |             | 2024.12.26 | 2024.12.23 ~ 2024.12.26 | 2024.12.27     |               |
| 감<br>정<br>평<br>가<br>내<br>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개호         | 구분건물       | 1개호                     | -              | 1,201,000,000 |
|                            |   | 이           | 하          | 여                       | 백              |               |
|                            | 합계  |             |            |                         | ₩1,201,000,000 |               |
| 심사<br>확인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br>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br>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             |            |                         |                |               |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퀵스에비뉴 주건축물제1동 제1층 제109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뢰된 경매(2024타경7408)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나. 감정평가조건

--

### 3. 기준시점 결정 및 사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12월 26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 4. 실지조사 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 ~ 2024년 12월 26일에 대상물건의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거래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음.

## II. 감정평가방법

### 1. 감정평가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 2. 감정평가방법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가치를 일체로 하여 유사사례를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이 있음.

나. 1동 전체의 가액을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한 후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원가법” 등이 있음.

다. 수익성부동산의 구분소유권 감정평가시 대상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한 이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대상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3.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규정

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의거하였음.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는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 4.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본건은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관련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5. 일괄, 구분, 부분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6조에 의거 인근 유사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인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 III. 그 밖의 사항

1. 본건 대상물건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은 귀 법원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자료에 의하였음.
2.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및 현황 점유부분에 의거하였음.
3.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②항에 의거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귀 법원 요청에 의거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토지·건물의 배분 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표기하였음.
4. 본건 내부구조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조사 등을 기초로 도시하였으므로 실제 내부구조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

## IV. 대상물건의 개요

### 1.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건물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 구 분     | 내 용                           |       |        |       |     |       |       |
|---------|-------------------------------|-------|--------|-------|-----|-------|-------|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       |        |       |     |       |       |
| 명 칭     | 퀵즈에비뉴 주건축물제1동 1층 109호         |       |        |       |     |       |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       |     |       |       |
| 대지면적(㎡) | 2,374.1                       |       |        |       |     |       |       |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8층 |       |        |       |     |       |       |
| 사용승인    | 2022년 10월 14일                 |       |        |       |     |       |       |
| 주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       |        |       |     |       |       |
| 설비현황    | 난방 설비                         | 냉방 설비 | 위생 급배수 | 소화 설비 | 승강기 | 주차 설비 | 기타 설비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2. 대상물건의 현황

| 일련 번호 | 동/층/호             | 용 도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 | 공급면적 (㎡) | 대지지분 (㎡) | 비 고 |
|-------|-------------------|--------------------|----------|----------|----------|----------|-----|
| 가     | 주건축물제1동/<br>1/109 | 제1종근린생활시설<br>(소매점) | 38.88    | 30.97    | 69.85    | 10.02    | -   |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공용부분의 “주” 부분 면적임.

## 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 2. 가격조사자료

#### 가. 인근지역 내 유사 거래사례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등 ]

| 사례<br>기호 | 소재지<br>(건물명칭)      | 동/층/호                | 전유면적<br>(㎡) | 거래금액<br>(원)   | 거래단가<br>(원/㎡) | 거래시점       | 비 고 |
|----------|--------------------|----------------------|-------------|---------------|---------------|------------|-----|
|          |                    |                      |             |               |               | 사용승인       |     |
| #1       | 감이동 440-2<br>퀵에비뉴  | 주건축물제1동<br>제1층 제102호 | 38.88       | 1,182,384,000 | 30,411,000    | 2022-12-08 | -   |
|          |                    |                      |             |               |               | 2022-10-14 |     |
| #2       | 감이동 525-8<br>준메디타워 | 제1층 제108호            | 33.6        | 1,064,000,000 | 31,667,000    | 2023-05-26 | -   |
|          |                    |                      |             |               |               | 2020-02-11 |     |

\* 단가는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평가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 사례<br>기호 | 소재지<br>(건물명칭)      | 동/층/호                   | 전유면적<br>(㎡) | 평가<br>목적   | 감정평가액(원)      | 기준시점       |
|----------|--------------------|-------------------------|-------------|------------|---------------|------------|
|          |                    |                         |             |            | 단가(원/㎡)       |            |
| #3       | 감이동 440-2<br>퀵즈에비뉴 | 주건축물제1동<br>제1층<br>제109호 | 38.88       | 담보<br>(본건) | 1,180,000,000 | 2023-03-13 |
|          |                    |                         |             |            | 30,350,000    |            |

\* 단가는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음.

### 다.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 구 분 | 가 격 수 준  |
|-----|--|
| 아파트 | 기준시점 당시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br>층별, 향별, 실사용면적 등에 따라 전유면적 기준<br>27,000,000원/㎡ ~ 33,000,000원/㎡ 내외 수준으로 탐문 조사됨. |

### 라. 인근 유사부동산 경매낙찰통계

[출처 : 부동산태인 등]

| 소재지        | 기간   | 물건구분 | 평균낙찰가율(%) | 낙찰건수(건) |
|------------|------|------|-----------|---------|
| 경기도<br>하남시 | 최근1년 | 근린상가 | 58.74     | 25      |

### 3.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물건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는 사례인 거래 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4. 사정보정

선정된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사정보정치 = 1.000)

### 5. 시점수정

[출처 : 한국감정원 R-one, KAPA HUB]

지역 : 경기도 (22.12.08~24.12.26)

집합상가

지역 : 경기도 (22.12.08~24.12.26)

2022년 04분기 : 0.15

2023년 01분기 : -0.07

2023년 02분기 : 0.01

2023년 03분기 : -0.04

2023년 04분기 : 0.22

2024년 01분기 : 0.36

2024년 02분기 : 0.43

2024년 03분기 : 0.32

2024년 04분기 : 0.32 (2024년 03분기 자료)

$$(1+0.0015*24/92)*(1-0.0007)*(1+0.0001)*(1-0.0004)*(1+0.0022)* \\ (1+0.0036)*(1+0.0043)*(1+0.0032)*(1+0.0032*87/92) \approx 1.01581$$

시점수정치: 1.01581

※ 기준시점이 속한 월 이후의 매매가격지수가 미발표된 바,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함.

## 6. 가치형성요인 비교

| 요인             | 세부항목 (상업용)            | 기호 가 / 사례 #1 |                              |
|----------------|-----------------------|--------------|------------------------------|
| 단지<br>외부요인     |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 1.00         | 본건과 사례는 같은건물에<br>소재하는 바 대등함. |
|                |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              |                              |
|                |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              |                              |
|                | 배후지의 크기               |              |                              |
|                | 상가의 성숙도               |              |                              |
|                |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              |                              |
| 단지<br>내부요인     |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 1.00         | 본건과 사례는 같은건물에<br>소재하는 바 대등함. |
|                | 건물전체의 공실률             |              |                              |
|                |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              |                              |
|                |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              |                              |
|                |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              |                              |
|                |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              |                              |
| 호별요인           | 층별 효용                 | 1.00         | 본건은 사례와 대등함.                 |
|                |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              |                              |
|                | 주출입구와의 거리             |              |                              |
|                |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              |                              |
|                | 향별 효용                 |              |                              |
|                |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              |                              |
| 기타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대등함.                         |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누계) |                       | 1.000        | -                            |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일련<br>번호 | 사례 단가<br>(원/㎡) | 사정<br>보정 | 시점<br>수정 | 가치형성<br>요인 | 산정단가<br>(원/㎡) | 전유면적<br>(㎡) | 시산가액<br>(원)   |
|----------|----------------|----------|----------|------------|---------------|-------------|---------------|
| 가        | 30,411,000     | 1.000    | 1.01581  | 1.000      | 30,891,798    | 38.88       | 1,201,000,000 |

\* 시산가액은 십만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음.

## V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 1. 감정평가액

| 일련<br>번호 | 비준가액(원)       | 감정평가액(원)      | 비 고 |
|----------|---------------|---------------|-----|
| 가        | 1,201,000,000 | 1,201,000,000 | -   |
|          | 합 계           | 1,201,000,000 | -   |

### 2.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인근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기타 가격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의 위험성 및 장래동향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아파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인 편임.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건 중 1층 109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창 호 : 강화유리창임.

## (4) 이용상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노폭 약20m, 남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종로1류(폭 20m~25m)(접합), 종로2류(폭 15m~20m)(감일)(접합),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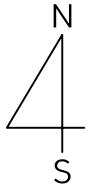
### (9) 공부와의 차이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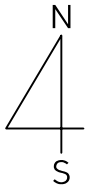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퀵즈에비뉴주건축물제1동 제1층 제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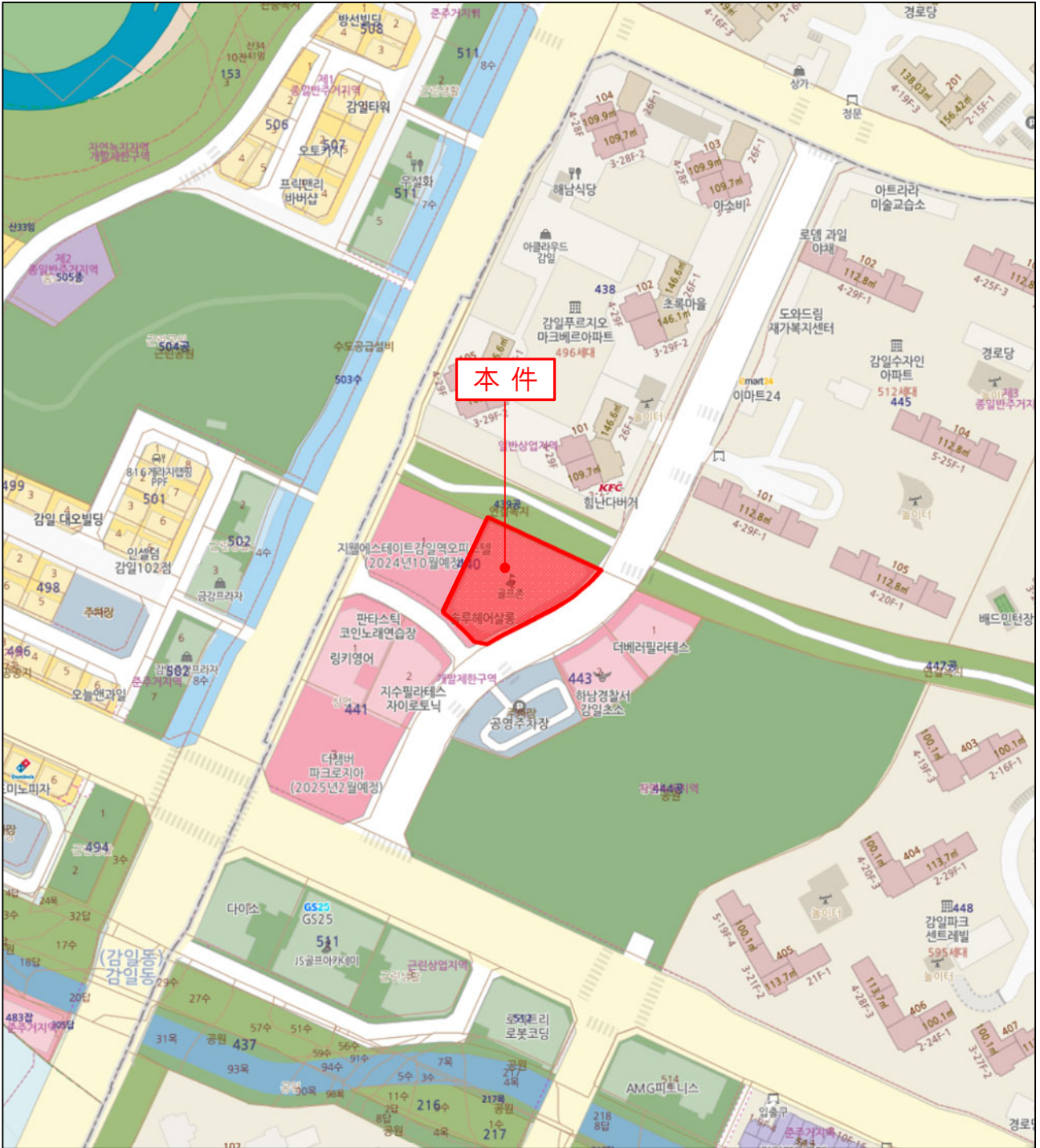


# 상세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퀵스에비뉴주건축물제1동 제1층 제109호







109



01



02



03

# 회 보 서

우)12984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031-4 201호(풍산동)  
E-Mail : daeyoung1@kapaland.co.kr 홈페이지 : www.daeyoungap.co.kr

TEL. 031-796-9096  
FAX. 031-796-9097

문서번호 : A241223-03-002

시행일자 : 2024-12-27

수 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박미정

참 조 : 경매6계

제 목 : 감 정 의뢰 에 대 한 회 보

|    |    |  |   |  |  |
|----|----|--|---|--|--|
| 선결 |    |  | 지 |  |  |
| 접  | 일자 |  | 시 |  |  |
| 수  | 시간 |  | 결 |  |  |
|    | 번호 |  | 재 |  |  |
| 처  |    |  | · |  |  |
| 리  |    |  | 공 |  |  |
| 과  |    |  | 람 |  |  |
| 담  |    |  |   |  |  |
| 당  |    |  |   |  |  |
| 자  |    |  |   |  |  |

1. 저희 (주)대영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2.20자 귀 제 『2024타경7408』호로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주식회사덕원커뮤니케이션 소유물건(2024타경7408)』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2 부  
2. 청구서 1 부

(주)대영감정평가법인

# 수수료 청구서

( 전화: 031-796-9096, FAX: 031-796-9097 )

문서번호 : A241223-03-002

수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박미정 귀하

제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12.20 자 귀 제 『 2024타경7408 』 호로 의뢰하신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퀸즈에비뉴주건축물제1동 1층 109호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 과목      | 금액        | 비고   |
|---------|-----------|--|
| 평가 수수료  | 1,044,640 |  |
| 실비      | 212,000   | (1,145,000+201,000,000 x 8/10,000)x 0.8배 ≒ 1,044,640 |
| 여비      | -         |  |
| 토지조사비   | 10,000    |  |
| 물건조사비   | 2,000     |  |
| 공부발급비   | 6,000     |  |
| 기타 실비   | 230,000   |  |
| 비소계     |           |  |
| 특별용역비   | -         |  |
| 공급가액    | 1,274,000 | 1,000원 미만 절사   |
| 부가세     | 127,400   |  |
| 합계      | 1,401,400 |  |
| 기납부 착수금 | -         |  |
| 정산청구액   | 1,401,400 |  |

붙임 : 감정평가서 1부

※ 송금처 ※

하나은행 : 154-910024-93104(예금주:(주)대영감정평가법인)

IBK기업은행 : 954-019900-04-016(예금주:(주)대영감정평가법인)

(주)대영감정평가법인 본사

대표이사 우 상 봉